

물품계약서(최종)



※ 원본확인용 QR코드

별첨 계약물품명세서,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,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달물자 구매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기명 날인한다.

계약일자 : 2019/11/15

<계약자>

<발주처>

서울지방조달청
조달물자분임계약관
황광하

과 장 : 황광하 (Tel : 070-4056-8730)
사무관/서기관 : 김정은 (Tel : 070-4056-8824)
담 당 : 최성윤 (Tel : 070-4056-8763)

<계약상대자>

상 호 : 탐인더스트리(주)
주 소 :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9길 38, 구로3차 에이스
대 표 자 : 이정임
사업자등록번호 : 118-81-17437
주민 등록 번호 : 571011- *****
전 화 번 호 : 02-2109-5051
팩 스 번 호 : 02-2109-5055

<수요기관>

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중량물재생센터,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-0 (용답동), 임대석(02-2211-2517)

계 약 방 법 :	수의계약	국가(지방)계약 법시행령 :	025조 01항 06호 라5목
계 약 번 호 :	12192176100	구매관리번호 :	12192181600
계 약 건 명 :	B,D,E계열 유량조절밸브 제어시스템 조달구매		
품 명 :	계장제어장치	수 량 :	1.000
		단 위 :	조
계 약 금 액 :	440,000,000 원	수 수 료 :	3,142,440 원
계 약 기 간 :		지체상금율 :	0.080
납 품 기 한 :	20200213	인 도 조 건 :	현장설치도
수 요 기 관 명 :	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중량물재생센터	분할납품:	부
		납 품 장 소 :	서울시중량물재생센터
검 사 기 관 :	수요기관	검 수 기 관 :	수요기관
지 급 방 법 :	대지급	계 약 구 분 :	총액계약
하자담보책임 기간(비고) :	2년 간(s/w 1년, 단, 규격서 등에 동기간 이상을 보증한 경우 그에 따름)		
계약특성명 :	[지방계약법] 물품의 제조·구매		
계약해지여부 :	N	계약해지일자 :	

[부가정보]

인지세액(과세대상여부) : 150000 원(Y)

지역개발/도시철도채권 : 원(해당없음)

계약보증금 : 44,000,000 원

특기사항 :

1. 물품구매(제조)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: 품목조정을

2.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제18조 하자보수기간 : 2년(s/w 1년, 단, 규격서 등에 동기간 이상을 보증한 경우 그에 따름)

3 기타사항

※ 동 계약은 「정부입찰·계약집행기준」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에 따라 공사관련 보험료 정산 대상 계약 건입니다. 계약자는 입찰공고에 반영된 보험료 등의 정산 증빙자료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, 수요기관은 정산내역을 제출받은 후 조달청으로 수정계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

○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'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'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'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'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.

- ① 우수조달물품 지정의 전제가 되는 기술(특허 등)을 적용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경우
- ②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·납품한 경우
- ③ 「물품구매(제조)계약 특수조건」 제12조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

※ 조달요청 시 조달청에 계약 후 14일 이내에 선금납부의사를 밝힌 계약 건에 대해 미 이행 시 계약서에 명기된 수수료(할인율적용)와 실제 고지수수료(할인율미적용)가 상이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.

※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.

○ (지방계약법 적용기관)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'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'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- 하청생산,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

※ 본 제품은 조달청이 지정한 우수조달물품(지정번호: 2016013, 제품명: 지진강도 적응형 원방감시제어장치(계장제어장치, 프로세스제어반))임

* 요청건명 : B,D,E계열 유량조절밸브 제어시스템 조달구매

* 수요기관연락처 : 02-2211-2522(담당:김도근)

[첨부문서]

No.	문서명	파일명
1	12192176100-물품계약일반조건(행정안전부예규제47호20181201).hwp	12192176100-물품계약일반조건(행정안전부예규제47호20181201).hwp
2	12192176100-물품구매(제조)계약특수조건(20181231).hwp	12192176100-물품구매(제조)계약특수조건(20181231).hwp
3	12192176100-시운전조건부계약추가특수조건(20150820).hwp	12192176100-시운전조건부계약추가특수조건(20150820).hwp
4	12192176100-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(20180524).hwp	12192176100-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(20180524).hwp
5	12192176100-지방자치단체_수의계약_각서.hwp	12192176100-지방자치단체_수의계약_각서.hwp
6	12192176100-청렴계약서(서약서).hwp	12192176100-청렴계약서(서약서).hwp
7	12192176100-1.방침서(제3,4처리장유량조절밸브제어시스템구축계획).hwp	12192176100-1.방침서(제3,4처리장유량조절밸브제어시스템구축계획).hwp
8	12192176100-2-1.제조구매지침서(B,D,E계열).hwp	12192176100-2-1.제조구매지침서(B,D,E계열).hwp
9	12192176100-2.자재명세서(1).xlsx	12192176100-2.자재명세서(1).xlsx

계약물품명세서

	물품분류번호	물품식별번호	품명	규격	지역	단위
No.	인도조건	수량	단가	계약금액	수요기관	납품기한
			기타			
	39121189	22889491	계장제어장치	계장제어장치, 탑인 더스트리,		조
1	현장설치도	1.000	440,000,000.000	440,000,000	서울특별시 물재생 센터 중량물재생센	20200213

목록화 요청 안내문

◎ 『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가 소유하거나 취득하고자 하는 물품(단, 서비스는 제외)에 대하여는 물품목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합니다.

(1) 계약자께서는 동 계약물품의 검수요청 이전에 아래 "목록화 요청 절차 안내"를 참고하여 물품목록번호(물품식별번호)를 부여받고, 이를 수요기관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(이미 목록화 완료된 품목은 해당 물품식별번호를 사용).

※ 단, 여러 물품이 복합된 경우는 개별 물품별로 각각 물품식별번호가 필요함.

(2)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에서는 동 계약물품의 검수완료 이전에 아래 "목록화 요청 절차 안내"를 참고하여 물품목록번호(물품식별번호)를 부여받은 후 물품관리 법령에 따른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(이미 목록화 완료된 품목은 해당 물품식별번호를 사용하여야 함).

※ 여러 물품이 복합된 경우는 반드시 개별 물품별로 각각 물품식별번호를 부여 받아 관리하여야 함.

◎ 목록화 요청 절차 안내

(1) 물품 검색 절차

나라장터(www.g2b.go.kr) 접속 → 상품정보 → 검색 : 검색한 결과 물품목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목록화 요청

(2) 목록화 요청 절차

나라장터(www.g2b.go.kr) 접속 → 상품정보 → 목록화요청 → 품목등록

※ 목록화 요청 절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

상품정보시스템 화면 가운데의 "목록화요청 이용안내"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, 궁금한 사항은 물품관리과(042-724-7174, 7182, 7271, 7257,7282)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.

선금지급제도 안내문

□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「정부 입찰·계약 집행기준」 및 안전행정부 계약예규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의 선금지급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대지급은 조달청에서, 직불은 수요기관에서 당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하고 있사오니 적극 활용하여 생산자금 확보에 도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.

□ 아울러, 선금지급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보증금액은 아래의 기준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고, 필요 이상으로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국가계약법 적용 시 : 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(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)

○ 지방계약법 적용 시 : 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정기예금 이율

네트워크론 제도 안내문

조달청에서는 중소 조달업체의 유동성지원을 위해 조달청 계약서(납품요구서)를 근거로 계약금액의 80%까지 대출을 해주는 『네트워크론(Network-Loan)』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.

□ 네트워크론 이용 가능 은행

- 산업, 경남, 광주, 기업, 농협중앙회, 대구, 부산, 우리, 전북, 하나은행, 외환은행(11개 은행)

□ 네트워크론 대상 계약 건

- 조달청 대지급 조건으로 계약한 물품구매계약(공동계약 제외)
- 총액계약은 계약금액, 단가계약은 납품요구금액 기준
(대출금액 등 세부사항은 개별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계약업체와 협의)

□ 상세안내 : 조달청홈페이지(www.pps.go.kr) > 정보제공 > 유동성지원

※ 기타 의문사항은 조달청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.